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 안 번 호 : 239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양산시장

다. 회 부 일 자 : 2020. 11. 16.

라. 상 정 일 자

-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 12. 1.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수도과장)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운영기간 도래(2017.05.22. ~ 2020.12.31., 3년6월10일간)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 및 새로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성 확보로 철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며 관내업체의 원활한 오·폐수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위탁사무 내용

- 위탁내용 :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관로, 중계펌프장 포함) 운영·관리

- 민간위탁 재계약
 - 위탁기간 : 2021.01.01. ~ 2021.02.28.(2개월 연장)
 - 사업비 : 202,170,520원(101,085,260원/월)
- 민간위탁 재위탁
 - 위탁기간 : 2021.03.01. ~ 2024.02.29.(3년간)
 - 사업비 : 4,733백만원(1,578백만원/년)

3)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양산시 어곡로 50
- 처리구역 : 1,522,223.4㎡(어곡일반산업단지, 어곡도시개발사업지구, 코카콜라음료주)
- 차집관로 : 14,227m(중계펌프장 2개소)

부지면적	최대시설용량	처리방식	목적
11,785㎡	10,000톤/일 (5,000톤/일, 2계열)	생물화학적처리+2차화학적처리+고도처리+UV소독	양산천 및 낙동강 수질개선

4)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종합평정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7명 이상)

5)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직영 및 공단운영에 비해 민간위탁할 경우 경제성, 전문성, 인력 탄력성 부문에서 장점이 있으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위탁 효과

-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확보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관리업체의 원활한 오·폐수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마련

7) 향후계획

- 2020. 11. :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안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0. 12.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민간위탁 용역 공고
- 2021. 02. : 위탁업체 선정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체결

3.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 상 운)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존의 위탁계약이 2020.12.31.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만료시한에 임박하여 위탁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탁자선정 절대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위탁기간 2021.01.01.부터 2021.02.28.까지는 기존 업체와의 위탁계약 연장을 통해 수탁하고 이후 3년간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1회, 5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가능 하도록 되어있어 법률상 문제점은 없음.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9
----------	-----

제출연월일 : 2020. 11. 13.

제출자 : 양산시장

1. 제안이유

민간위탁 운영기간 도래(2017.05.22. ~ 2020.12.31., 3년6월10일간)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 및 새로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성 확보로 철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며 관내업체의 원활한 오·폐수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나. 위탁사무 내용

- 위탁내용 :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관로, 중계펌프장 포함) 운영·관리
- 민간위탁 재계약
 - 위탁기간 : 2021.01.01. ~ 2021.02.28.(2개월 연장)
 - 사업비 : 202,170,520원(101,085,260원/월)
- 민간위탁 재위탁
 - 위탁기간 : 2021.03.01. ~ 2024.02.29.(3년간)
 - 사업비 : 4,733백만원(1,578백만원/년)

다.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양산시 어곡로 50
- 처리구역 : 1,522,223.4㎡(어곡일반산업단지, 어곡도시개발사업지구, 코카콜라음료(주))
- 차집관로 : 14,227m(중계펌프장 2개소)

부지면적	최대시설용량	처리방식	목적
11,785㎡	10,000톤/일 (5,000톤/일, 2계열)	생물화학적처리+2차화학적처리+고도처리+UV소독	양산천 및 낙동강 수질개선

라.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종합평정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7명 이상)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직영 및 공단운영에 비해 민간위탁할 경우 경제성, 전문성, 인력 탄력성 부문에서 장점이 있으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위탁 효과

-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확보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관리업체의 원활한 오·폐수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마련

사. 향후계획

- 2020. 11. :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안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0. 12.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민간위탁 용역 공고
- 2021. 02. : 위탁업체 선정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체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9조제5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8조
-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② 법 제48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
-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8조(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순행정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